

도시철도 유통·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975
----------	------

제안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제안자 : 추승우, 홍성룡, 정진철, 이병도,
이승미, 박순규, 권수정, 전병주,
김제리, 최 선, 김경영, 문영민,
우형찬, 김종무, 이호대, 장인홍,
이태성, 김인제, 김혜련, 문병훈,
송재혁, 유정희, 김용석, 이광성,
오현정, 최정순, 고병국, 장상기,
이정인, 박기재, 김생환, 송도호,
서윤기, 이광호, 김경우, 임만균,
황인구, 경만선, 봉양순, 김화숙
의원(40명)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유통·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차량기지 내에 물류시설을 구축하고 민간 유통·물류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원활한 국가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건의함

2. 제안이유

- 코로나19사태 이후,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수도권 택배물량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2020년 7월,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 10개를 포함한 11개 부지에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는 유통·물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물류시설 부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적 보존기능을 상실한 도시철도 차량기지에 '택배화물 분류관련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음('20.02.22.)

- 하지만 도시철도법의 부대사업 정의에서는 '차량기지 내에 물류시설을 구축하여 민간 유통·물류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 이행이 어려운 사항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도시철도 유통·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정의에 '지방자치단체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의 범위를 물류시설운영업, 해운·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제외한 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으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도시철도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철도법」, 「물류정책기본법」

나. 기 타 : 없음

4. 이 송 처 : 국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도시철도 유통·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시 도시철도의 '19년 말 부채는 4조 6천억원에 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작년과 비교할 때 승객수요는 28%가 줄고, 운영수입 또한 26.1%가 감소하여 상반기 손실만 4,817억원으로 '20년 한해 적자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철도는 시민 부담 경감, 공공성 확보 등으로 인해 적정 수준의 운수수익을 확보하지 못해 요금 인상만으로는 도시철도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여객운수수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업다각화 및 새로운 방식의 수익사업모델 발굴을 통해 수익성 제고가 필요하며, 경쟁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사람'에서 '화물' 수송으로의 운수사업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합니다.

또한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온라인시장이 확대되면서 택배·물류산업이 급성장하였습니다.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수립연구(한국교통연구원, 2017)'에 따르면, 서울시 택배 물동량은 향후 5년간 374%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7년 기준 119,532㎡의 물류시설 부지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19년 6월)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20년 2월)으로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차량기지 물류시설 개발에 3년 간 약 29억 원 국비지원을 결정하며, 코로나19 이후 물류산업을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도시철도 유통·물류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정의에 ‘지방자치단체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의 범위를 물류시설운영업, 해운·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제외한 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으로 개정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원활한 국가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합니다.

2020. 10. 1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